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41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교육현황 제출 방법·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 추가(제48조제1항)

- 캠핑용자동차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추가

나.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 제출 시기 및 방법 규정(제53조)

- 연수기관은 교육 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연 4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특수작업형”을 “특수용도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서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제5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 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시·도지사가 그 현황을 제2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

20년 10년 8월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① 영 제1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① ----- ----- ----- ----- ----- -----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1. ----- ----- <u>특수용도형</u> ----- ----- ----- ----- ----- -----
<신 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서 <u>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u>
2.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

④ (생략)

<신설>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그 현황을 제2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